

1. 개정 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9호, 2023.10.31. 공포, 2025. 5. 1. 시행)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리나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승선을 위하여 탑승객이 작성·제출하는 승선신고서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노약자, 어린이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을 제고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업의 등록신청 지방이양(안 제22조,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 및 제14호의2 서식 개정)

- 1)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 2) 마리나선박대여업은 마리나선박이 주로 계류하는 시설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무를 처리하게하며,
- 3) 보관·계류업 및 정비업은 계류시설 및 정비시설의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선박 및 설비 등의 관리·감독이 용이토록 함

나.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지방이양(안 제23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변경등록증을 시·도지사가 발급도록 개정

다. 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지방이양(안 제24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개정

라. 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지방이양(안 제25조 및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개정

마. 마리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지방이양(안 제26조, 별지 제18호, 제19호 및 제19의2호 서식 개정)

- 법 제28조의4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마리나업의 휴업·재개업을 위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개정

바. 이용약관의 신고 등 지방이양(안 제27조, 별지 제20호, 제21호 및 제21호의2 서식 개정)

-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신고서(변경)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개정

사. 회원증의 발급 지방이양(안 제29조 개정)

- 법 제28조의9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 하던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개정
- 아.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의 제출 지방이양(안 제31조 개정)
 -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위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제출된 서류를 확인토록 개정
- 자. 출·입항 신고 편의성 향상 (안 제33조의2 개정)
 -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라 탑승객이 작성·제출해야 하는 승선 신고서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마리나선박을 주로 매어두는 계류시설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마리나선박의 주된 보관·계류시설이 위치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마리나선박 정비시설이 위치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7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객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승선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

양수산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 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지방해양 수산청장</u> 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 ----- ----- ----- ----- ----- ----- <u>마리나선 박을 주로 매어두는 계류시설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 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u>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 박 보관 · 계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마리나 선박 보관 · 계류업 등록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지방해양수산청장</u> 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u>마리나선박의 주된 보 관 · 계류시설이 위치한 장소를</u>

1. ~ 5. (생략)

③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마리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3조(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

관할하는 시·도지사---.

1. ~ 5. (현행과 같음)

③ -----

마리나선박 정비시설이 위치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

---.

제23조(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① -----

시 · 도지사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 · 도지사는

제24조(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마리나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
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
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
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8조의
4에 따라 휴업·재개업 또는 폐
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

제24조(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① -----

----- 시·도지사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

----- 시·도지사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회원증의 발급) ① ~ ③ (생략)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회원증

----- 시·도지사 -----

-----.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

----- 시·도지사 -----
-----.

제29조(회원증의 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도지사-----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①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① (생략)

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단서 신설>

----.

제31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① -----

----- 시·도지사
사-----.

1. ~ 8. (현행과 같음)

② -----
----- 시
·도지사는 -----

-----.

제33조의2(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승객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③ ~ ⑤ (생략)	<u>승선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의 위치

마리나선박 명세

사업기간

요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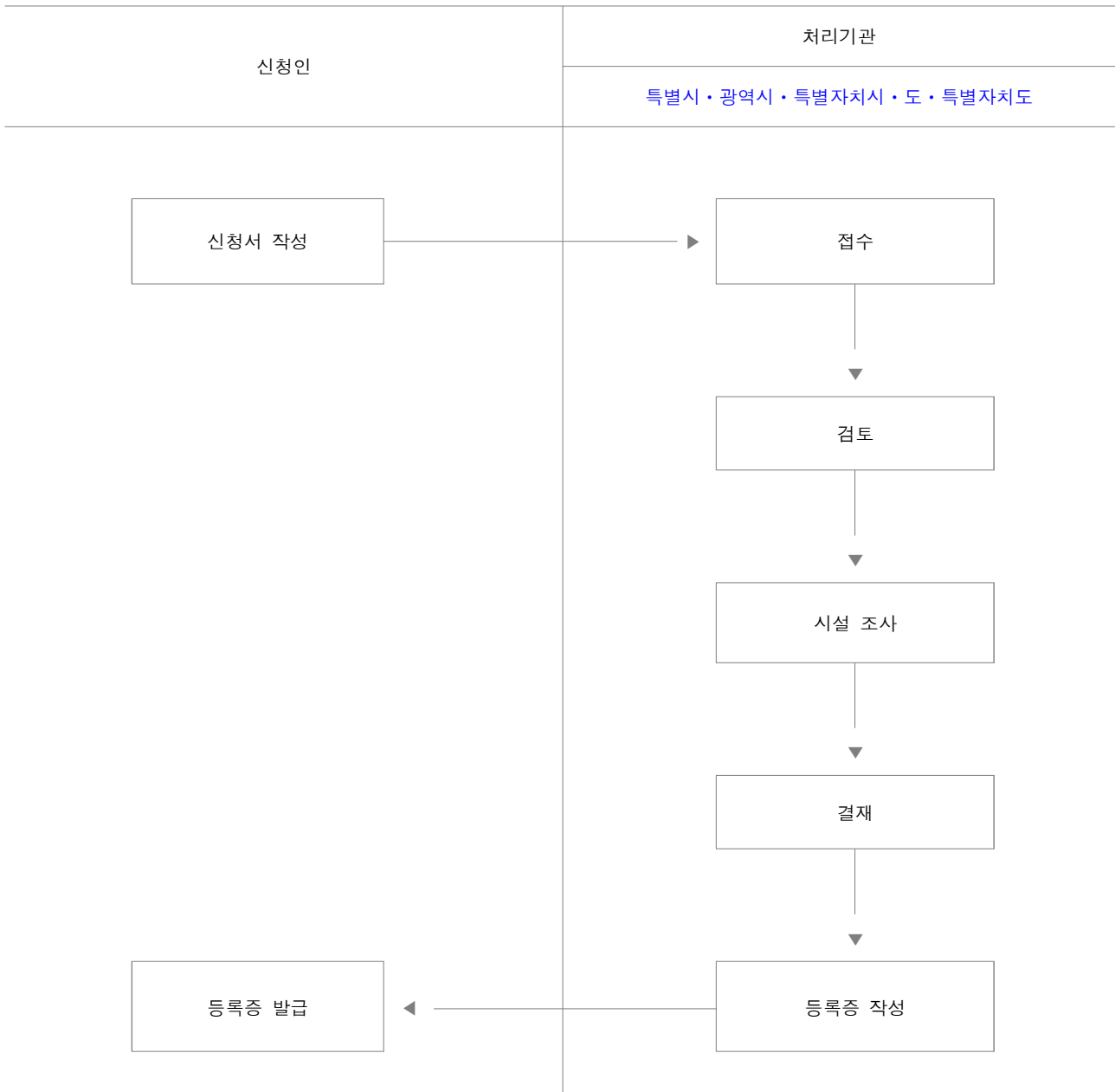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의 위치

보관·계류시설 명세

사업기간

요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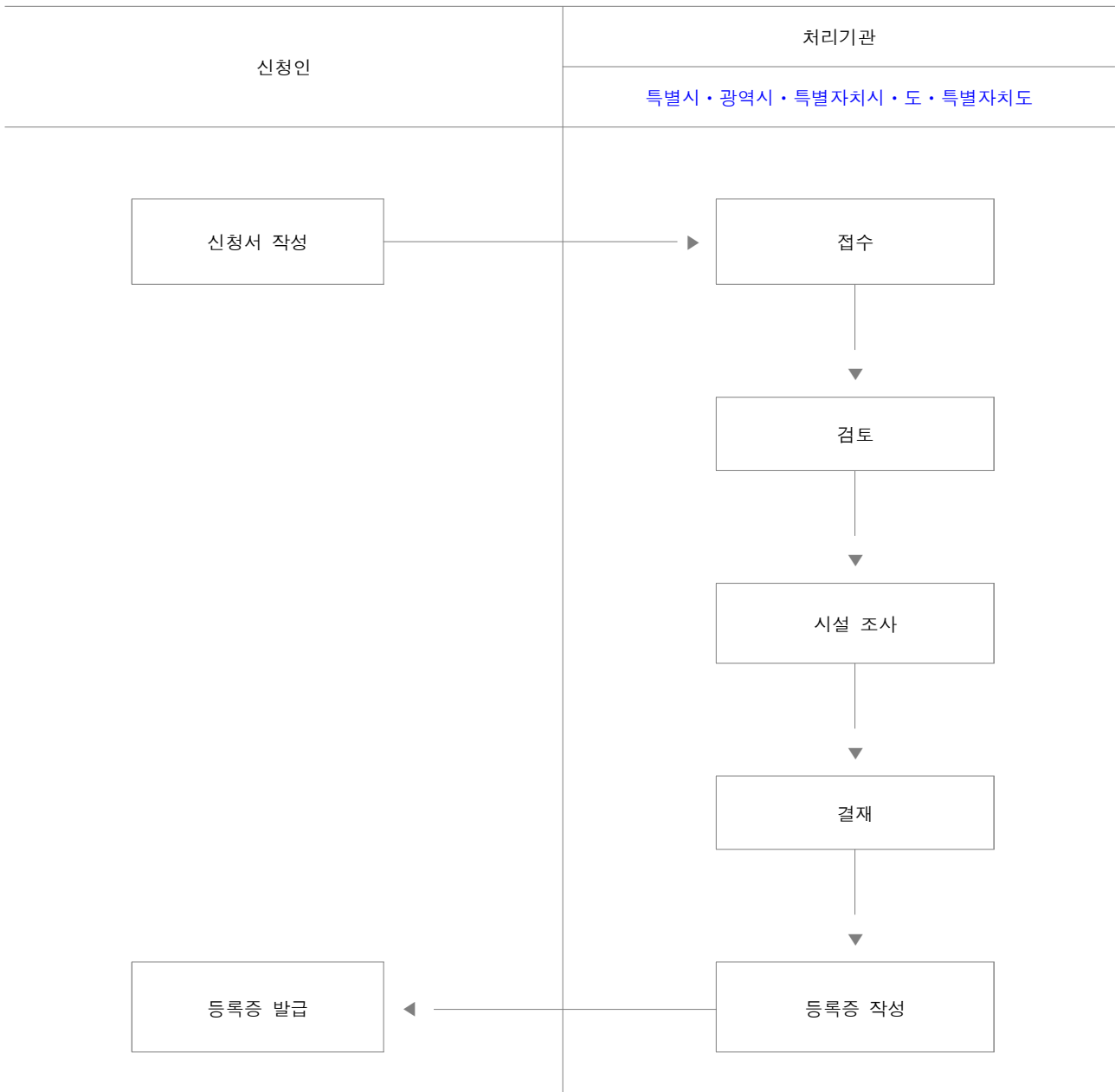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마리아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의 위치

정비항목

사업기간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마리아선박 정비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아선박 정비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마리아선박 정비사 자격증 사본 4. 정비항목, 정비시설 및 장비, 종사자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장 명세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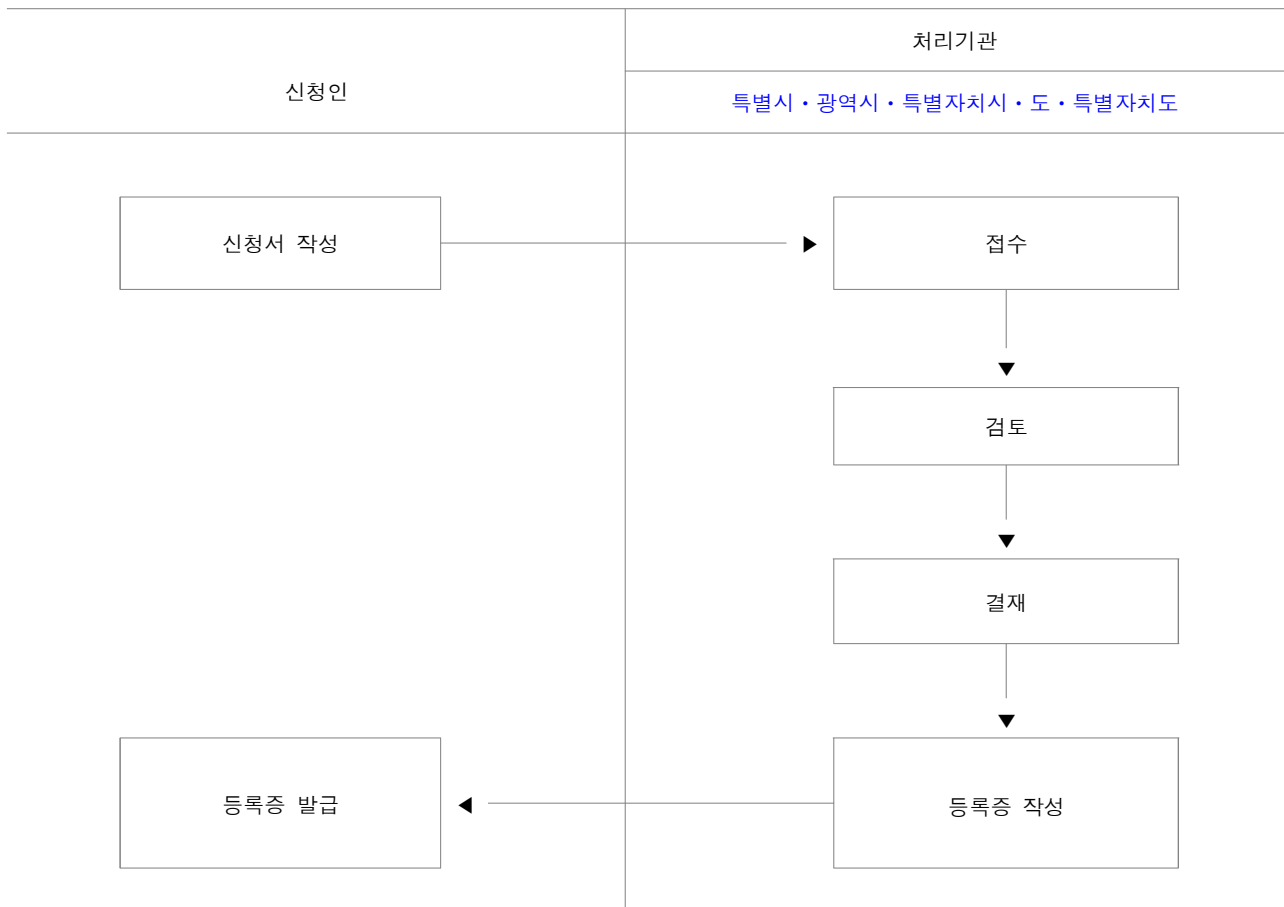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등록번호 제 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의 위치

마리나선박 명세

사업기간

요금

종사자

명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등록번호 제 호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의 위치

보관·계류시설 명세

사업기간

요금

종사자

명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등록번호 제 호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3. 주소
4. 정비항목
5. 사업장의 위치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마리아선박 대여업
변경등록신청서 []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 마리아선박 정비업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	----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의 위치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마리아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아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마리아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아선박 정비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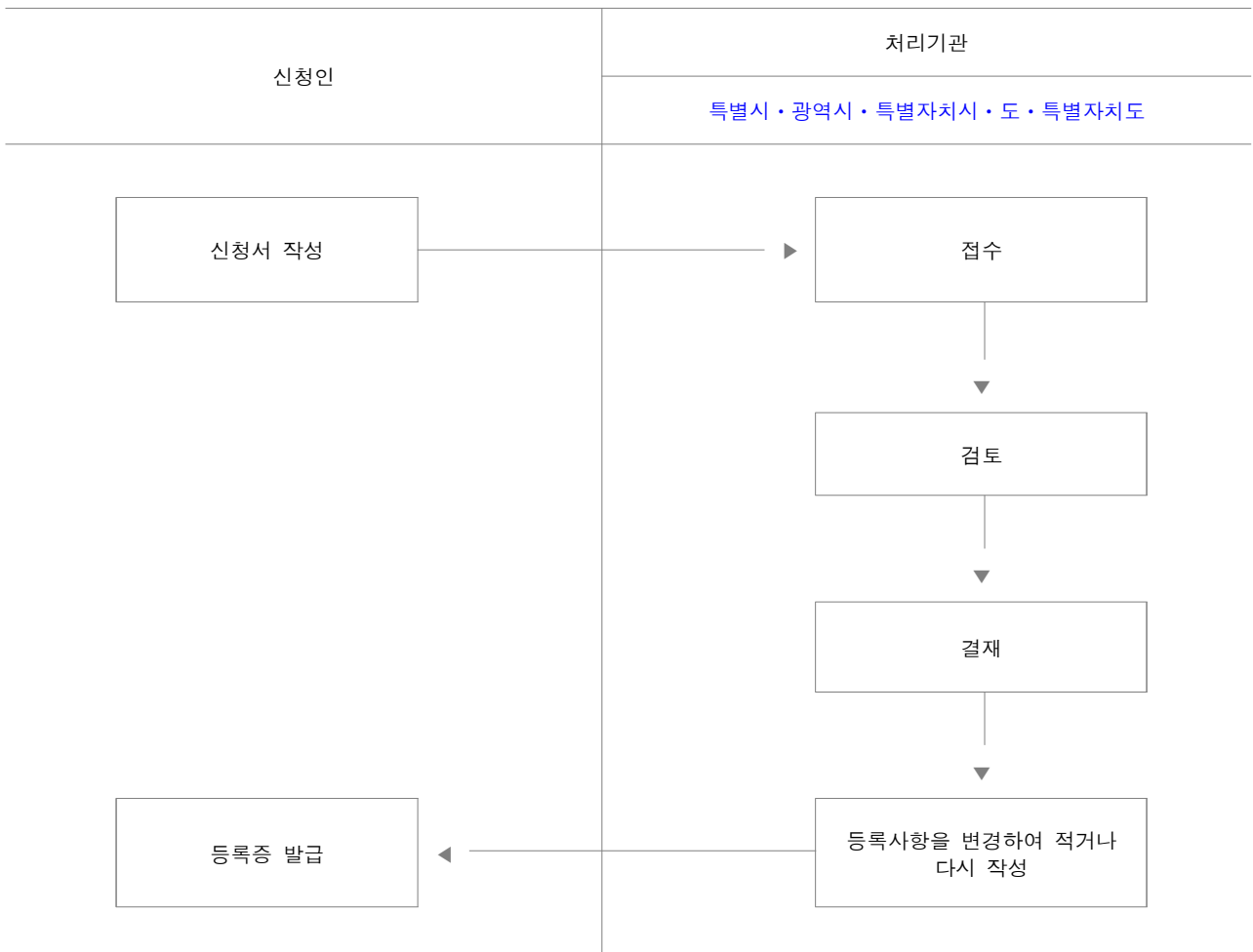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마리아선박
[]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갱신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등 록 증	등록번호	
	등록일	유효기간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갱신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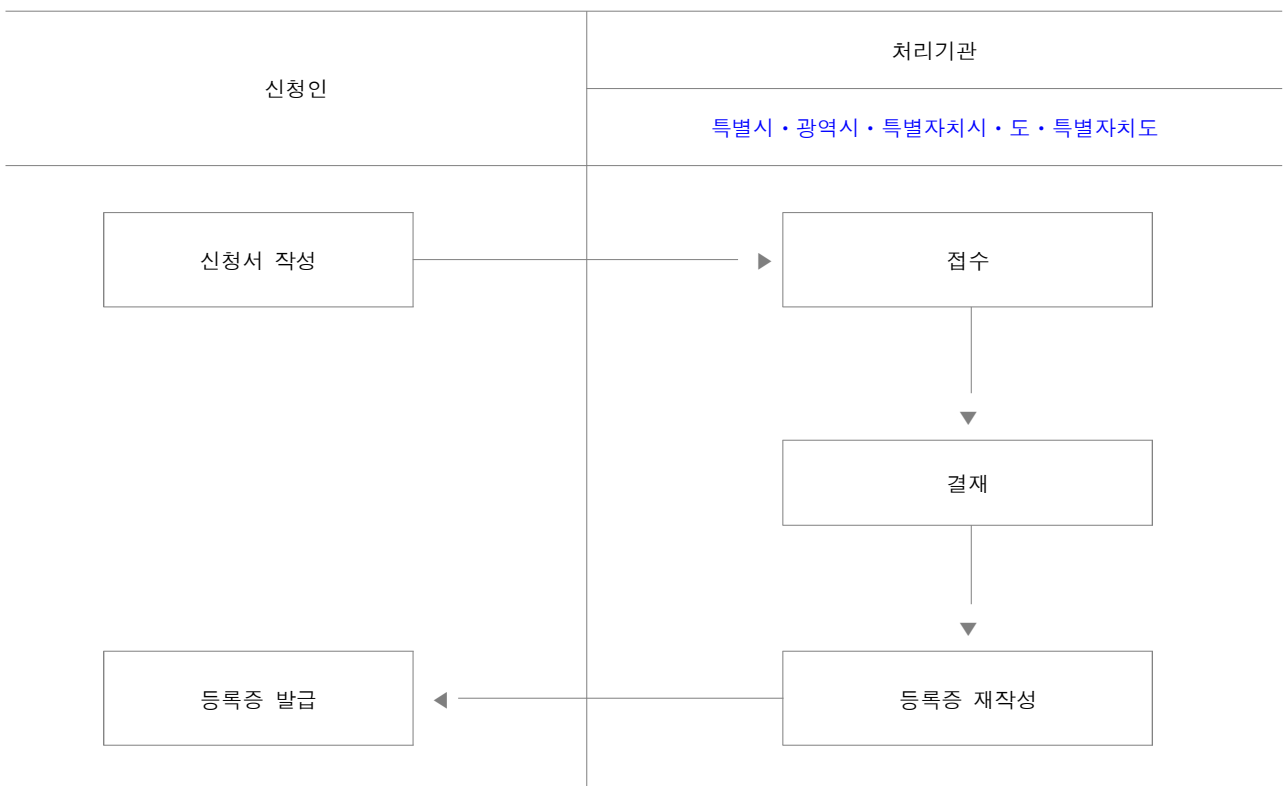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마리아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아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아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아선박 정비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마리나선박 **[] 대여업**
[] 보관·계류업 **지위승계 신고서**
[] 정비업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위 승계(합병) 일자			
지위 승계(합병) 사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2.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종전 등록사업자와 공유자·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증서류(종전 등록사업자가 법 제 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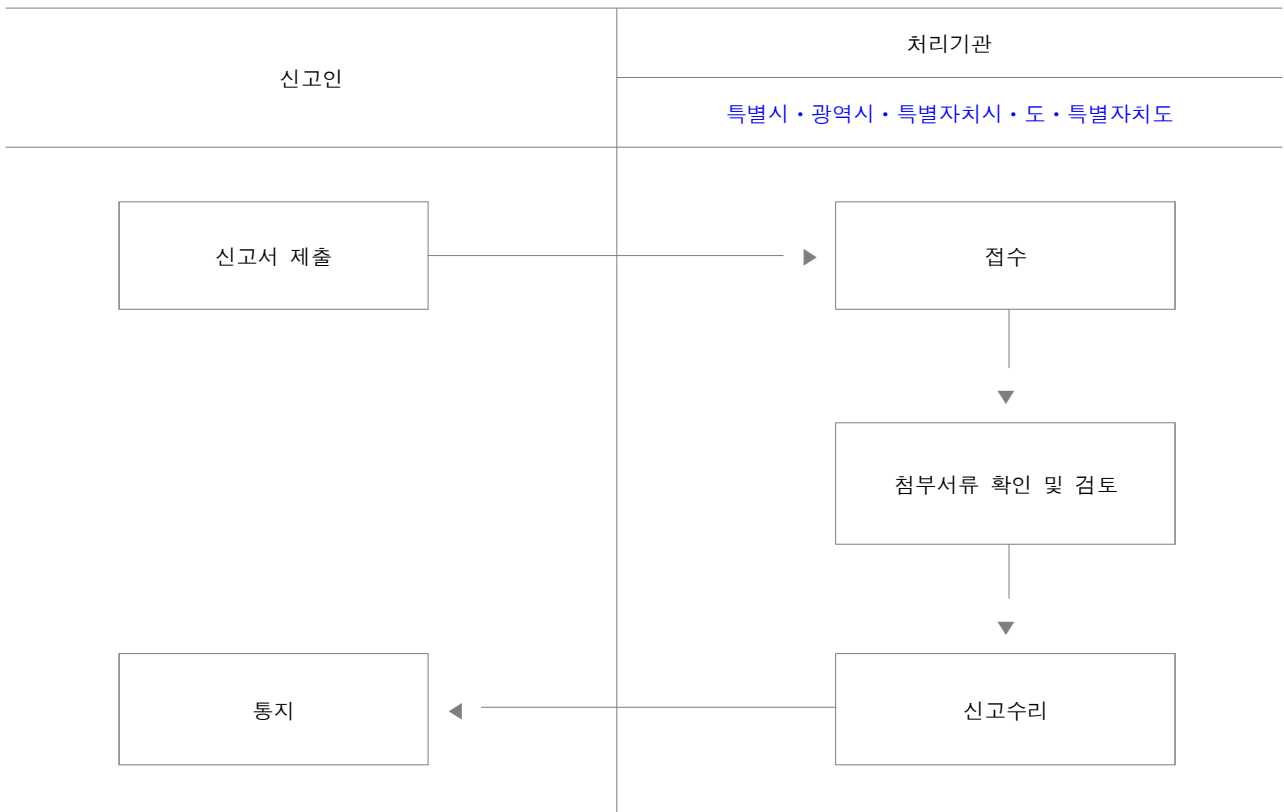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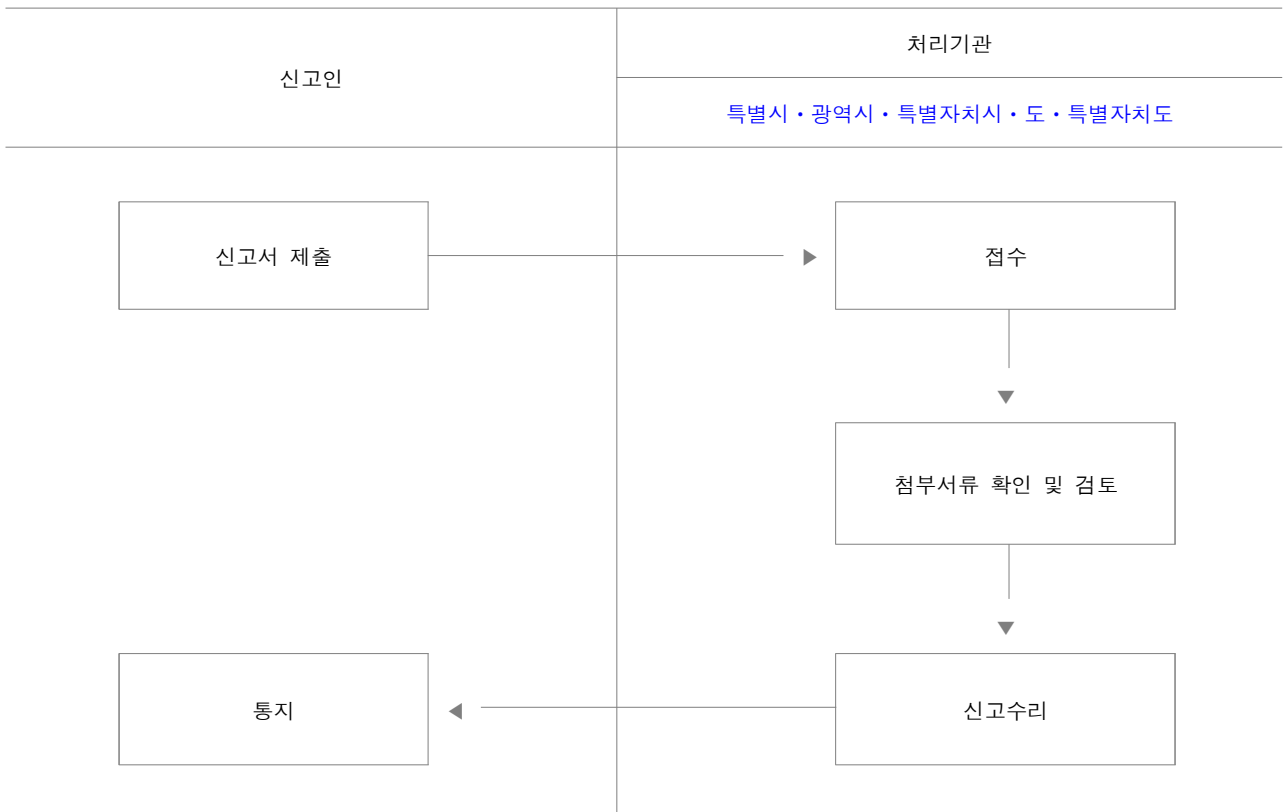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장의 위치

보관·계류시설 명세

부대시설 명세

신고사항	휴업(폐업·재개업) 날짜
	휴업(폐업·재개업) 사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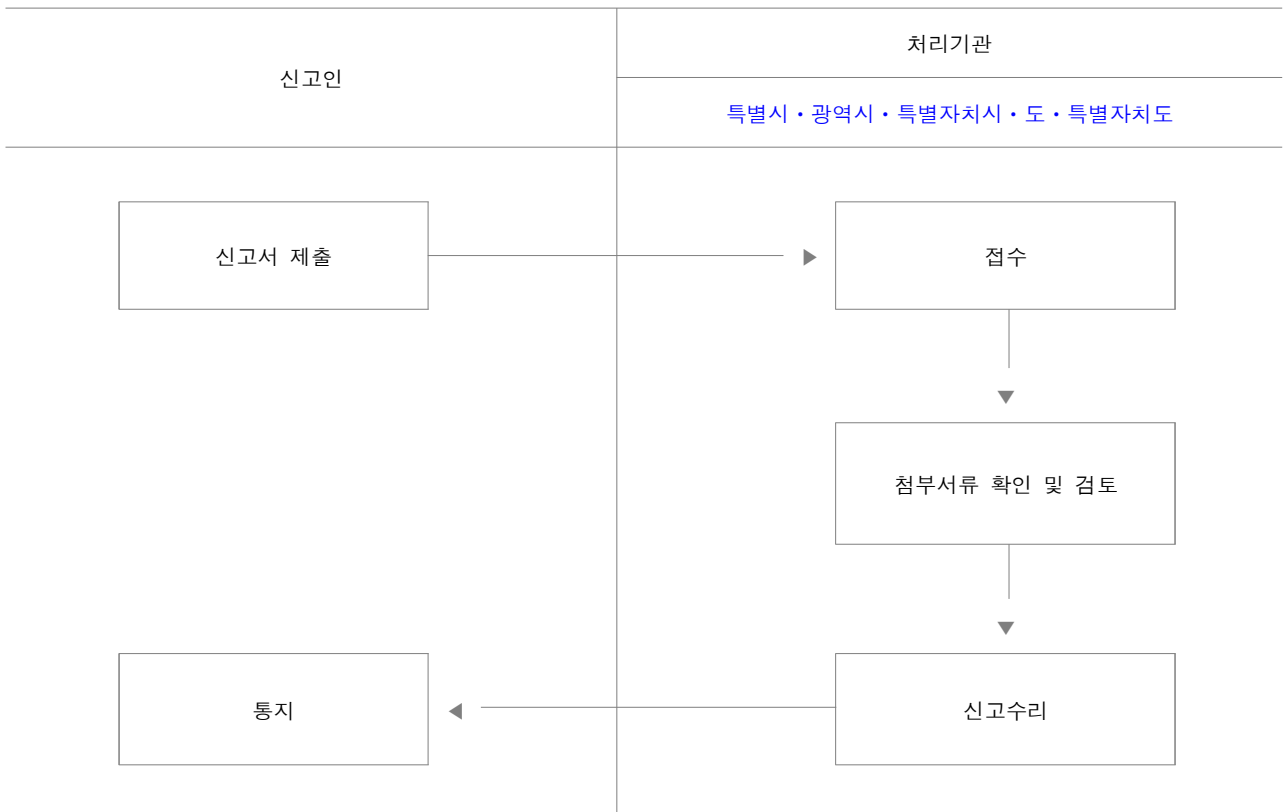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마리나선박 정비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의 위치

정비항목

신고사항	휴업(폐업·재개업) 날짜
	휴업(폐업·재개업) 사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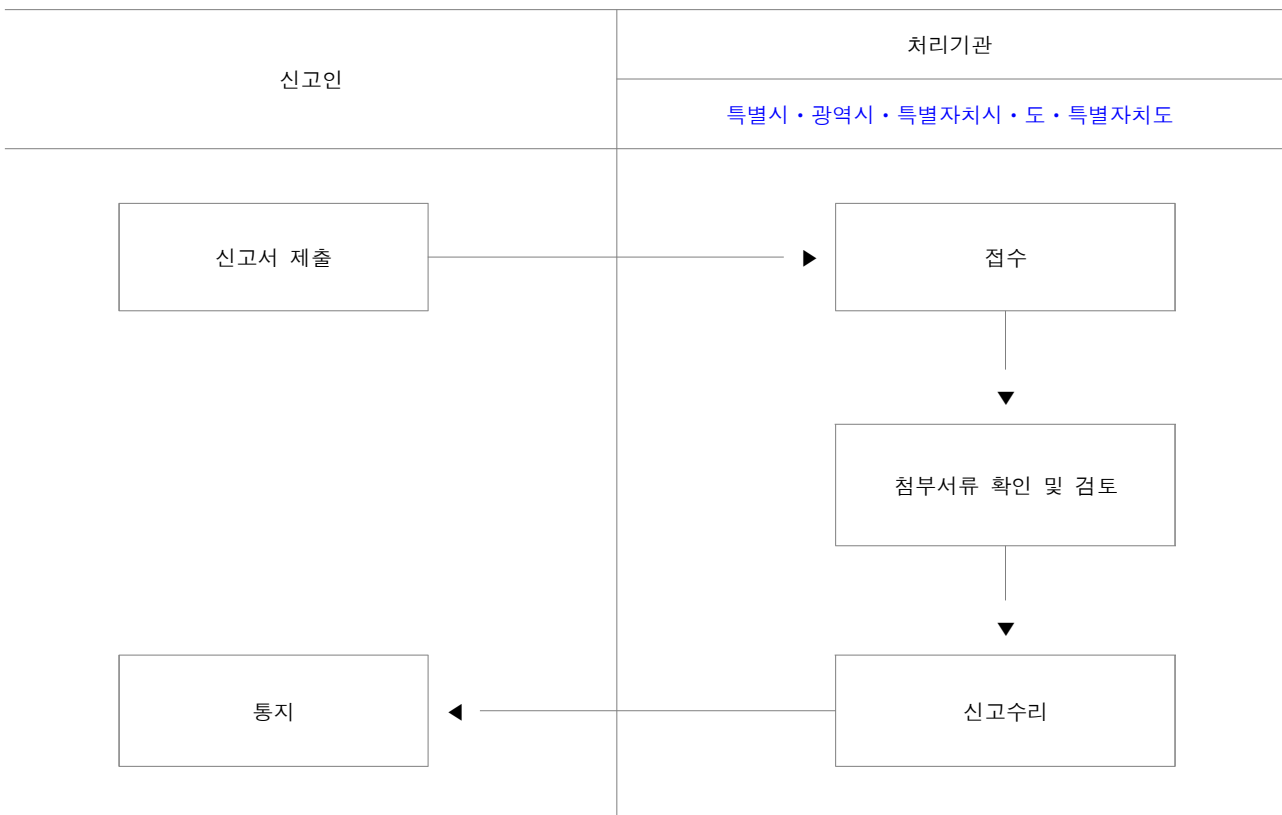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약관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장의 위치

마리나선박 명세

계류시설 명세

대여 기간	
대여료	(필요시 마리나선박 종류별 보관료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그 밖의 이용조건

적용일

변경 사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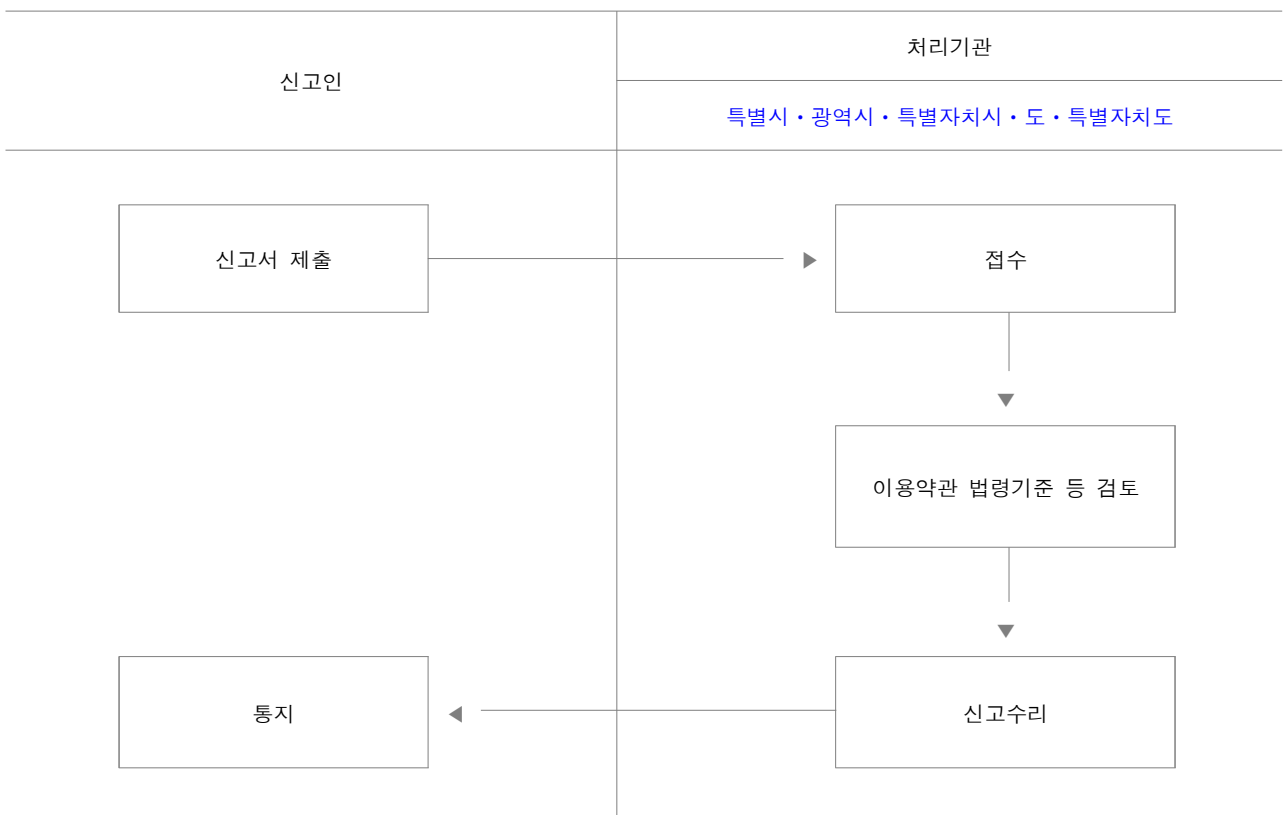
이
오
고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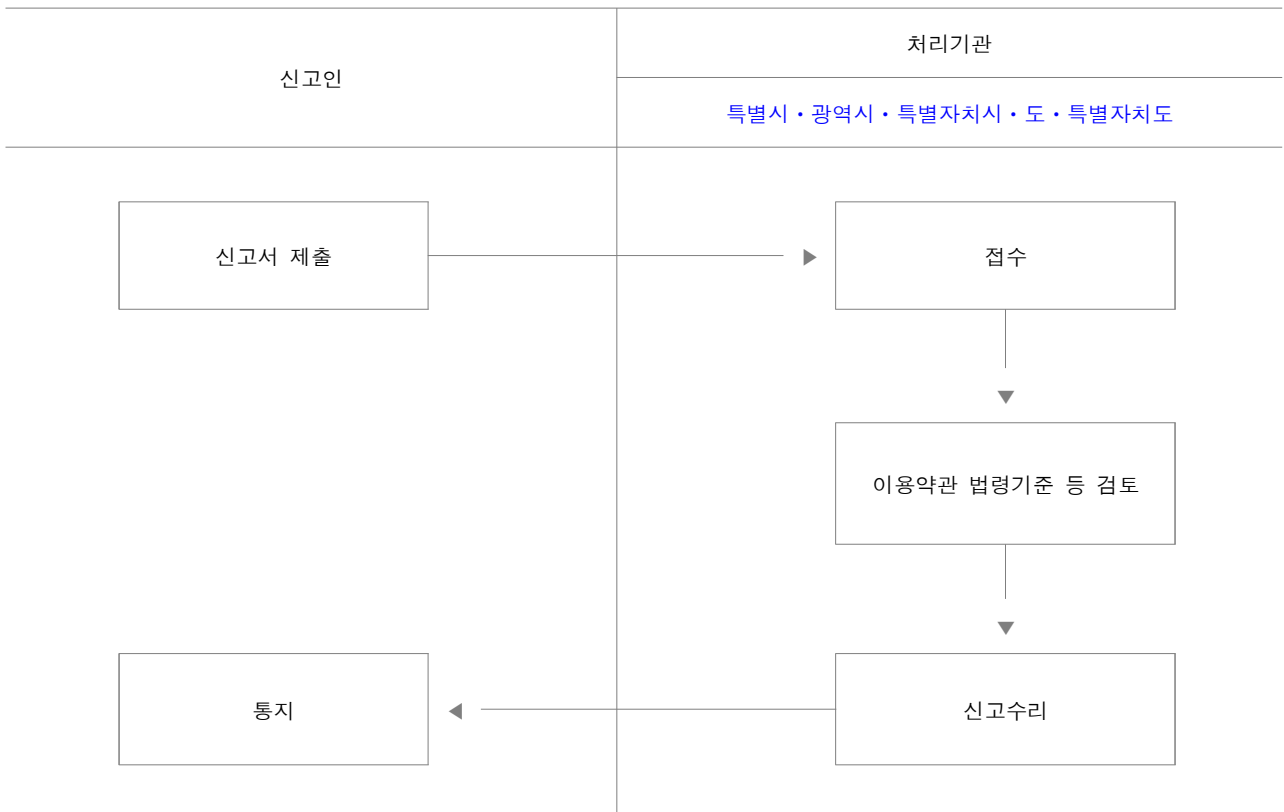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마리아선박 정비업 이용약관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의 위치

정비항목

정비 이용료	(필요 시 정비항목별 이용료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그 밖의 이용조건

적용일

변경 사유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